

소규모주택정비사업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주택사업특별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(가로주택 및 자율주택) 정비사업 활성화		
사업비 (당해년도)	406,000천원	[국비]	[사비]406,0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[구비]	[기타]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도시재생실	주거환경개선과	남정현 2133-7240	노경래 2133-7246	김희완 2133-7248
도시재생실	주거환경개선과	남정현 2133-7240	노경래 2133-7246	이아름 2133-7249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9예산액 (A)	2020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780,000	(x-) 406,000	(x-) △374,000	(x-) △47
시설비	(x-) 400,000	(x-) 0	(x-) △400,000	(x-) △100
공기관등에대한자 본적위탁사업비	(x-) 380,000	(x-) 406,000	(x-) 26,000	(x-) 6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	
공기관등에대한자본 적위탁사업비	○ 사업성분석	= 316,000천원
	- 가로주택정비사업 20개소 11,000,000원 * 20개소	= 220,000천원
	- 자율주택정비사업 12개소 8,000,000원 * 12개소	= 96,000천원
	○ 설계비 지원	= 90,000천원
	- 가로주택정비사업 2개소 35,000,000원 * 2개소	= 70,000천원
	- 자율주택정비사업 2개소 10,000,000원 * 2개소	= 20,000천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단독 및 공동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 등에서 소규모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
□ 사업근거

-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
-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: 2018 ~ 2022
- 지원대상: 단독 및 공동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
- 사업수행주체: 서울시, 자치구, 서울주택도시공사
- 추진방법: 조합설립인가-건축심의-사업시행인가-관리처분계획-착공-준공
- 사업의 주요내용: 사업성분석 비용, 건축설계비 지원

□ 추진경위

- '16.08.11.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발의
- '17.01.20.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회통과
- '17.02.08.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공포
- '17.12.28.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개선방안 수립
- '18.12.31.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·시행

□ 2020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406,000	
소규모주택(가로주택 및 자율주택) 정비사업 추진	2020.01~2020.12	290,000	자치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시행
소규모주택(자율주택) 정비사업 추진	2020.01~2020.12	116,000	자치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시행

4 사업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7년도	
2018년도	○ 소규모주택(가로주택 및 자율주택) 41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
2019년도	○ 소규모주택(가로주택 및 자율주택) 112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('19. 9. 기준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소규모주택(가로주택 및 자율주택)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8	(x-) 3,120,000	(x-) 0	(x-) 0	(x-) 3,120,000	(x-) 88,000	(x-) 0	(x-) 3,032,000